

『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곤, 강승수, 김복자, 김태근
박교상, 박세진, 최경동, 한성희 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정 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9조 ~ 안 제11조)

○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, 「청소년 기본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』은

-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,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 및 청소년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